

조달청은 정부 시설공사의 입찰 및 낙찰제도에 관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이 개정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그간 시행되어 온 제한적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적격심사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특히 이 제도에 낮은 설비건설업체 등 중소기업체들로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본지에서는 설비건설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문을 게재한다. 아울러 PQ심사기준 등 중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요약해 게재한다. [편집자註]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 공사의 수행능력, 입찰자격, 시공계획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를 심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Q”라 한다)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1

2.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P.Q 이외 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2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평가기준: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5

6.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일반 경쟁에 의하는 경우의 평가기준: 별지 6

7. 일괄입찰 등의 공사중 P.Q 대상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7

8. 일괄입찰 등의 공사중 P.Q 대상공사 이외의 평가기준: 별지 8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기술자 보유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심사 세부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 시공여유율의 평가자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가입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관리하는 전산망 자료에 의하거나 관련협회에서 별도 통보 또는 제출하는 자료에 의거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관리하는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관련협회 미가입 업체인 경우 평가자료는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한다. 다만, 시공여유율 평가를 위한 미기성 총액과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의 자료로만 평가한다.

3. 경영상태의 평가자료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조달청 P.Q 심사기준”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및 부칙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코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P.Q 심사기준의 별첨양식 7호 서식에 의한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명

세서에 의한다.

5. 경영상태평가시의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하되 부채비율에 한하여 당해업체의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심사항목에 대한 평균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6.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의 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공실적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항목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다음 각호에 의거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기재출된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 내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P.Q공사:P.Q 심사서류 제출시 제출된 자료
2. 일괄입찰 등 공사: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제출된 자료
3. P.Q공사 및 일괄입찰 등 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

⑤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적용하며 취득점수가 가점 등의 영향으로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일괄입찰 등의 공사인 경우 설계점수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수요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등에서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제3조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2조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및 시공여유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P.Q공사의 수행능력평가는 조달청 P.Q 심사기준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2. P.Q공사 이외의 일반공사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및 시공여유율(P.Q공사 포함)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시공경험평가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경험(규모 또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을 대비하여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수치의 분모 합산자료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자의 합산금

액으로 각 심사항목별 경영상태 비율을 산정한 후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신인도의 평가는 조달청 P.Q 심사기준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라. 시공여유를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자료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모의 합산금액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자료에 시공비율을 곱한 수치의 분자 합산자료로 각 심사항목별 시공여유를 계수를 산정하여 시공여유를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마.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등록 또는 면허(이하 “업종”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공사에 해당하는 법령의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 해당 공사예정금액은 공사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2)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 서 반올림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

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공사예정금액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단, 소방공사는 공사예정금액)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합산 시공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분야의 취득점수에 합산시공비율만큼 가산 평가하되 상한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공사현

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의 가산비율은 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적용(입찰공고시 적용기준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하되 당해지역별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 평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지역업체가 일반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가산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하며 상한은 12%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동수급체중 평가가 제외되는 경우와 지역공동도급에 따른 가산평가가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시공비율이 5% 미만인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되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 적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전문건설업 부문만을 분담이행하는 전문건설업자의 경영상태 및 신인도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 부문만을 분담이행하는 경우에도 전문건설업자로 보아 평가에서 제외한다.

4. 당해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의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산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중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은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은 공동수급체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⑥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중 현장관리계획 및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은 구성원 각각을 평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합산한다. 다만, 주공종 이외의 업종별 분담시공부분이 입찰가격의 100분의 10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시공여유율을 평가한 후 시공계획 적정성의 배점총점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하며 예상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예상평가점수를 통보하고 일정기간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하여도 예상평점이 85점 미만인 입찰자에게는 예상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상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별표 3의 현장관리 및 공사관리계획 제출확약서를 제출케 하며, 대상업체는 동 확약서의 제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세부계획서(별표 4)
2.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세부계획서(별표 5)

④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현장 및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세부계획서는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해당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⑤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 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 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또는 불명확한 등으로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계획의 적정성 분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하되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⑦ 제6항에 의하여 보완을 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조건 등이 하수급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⑧ 제2항에 의한 확약서와 제3항 및 제5조에 의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6항의 기한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⑨ 시행령 제78조의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설계점수(이하 “설계점수”라 한다)가 높은 자 순으로 4인에게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절차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심사한 후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제5조 [제출서류 등]

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성중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호 및 2호의 경우 관련협회 미가입업체는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당해업체 소속 관련협회 등의 공사실적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입찰공고에 명시 또는 필요시)

2. 당해업체 소속 관련협회 등의 최근 결산년도 경영상태 및 기술개발투자확인서(입찰공고에 명시 또는 필요시)

3.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가능확인서(필요시)

4. 현장관리조직표

5.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인, 안전관리자 등의 인적사항 및 경력증명서

6. 공정관리, 품질관리, 하도급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보전 계획서

7. 하수금액정자 소정양식의 견적서를 첨부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단, 부대입찰대상 공사인 경우의 하도급관리계획서는 입찰시 제출한 부대입찰서류에 의한다.

② 일괄입찰 등의 공사인 경우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로 하며, 현장관리 세부계획서의 보완방법은 일반공사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6조 [적격심사 결격]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부도·파산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국장

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심사협에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부대입찰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하도급비율이 충족되지 않거나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부대입찰서류상의 하도급할 총금액에 대한 하도급금액(하수급 예정자의 하도급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7 미만(백분율 계산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배제한다.

② 전항에 의한 하도급 비율 및 하도급금액은 조달청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 제2호로 요구하는 하도급 사항 양식에 의하되 부대입찰 내용의 심사는 회계예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8조 [적격심사시 감점]

①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협약서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제4조 제6항에 의하여 관계서류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 보완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사실 발생일로부터 3월동안 입찰을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총 평가점수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다만, 제4호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10점 감점

2.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약약서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소정의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5점 감점

3. 제4조 제5항에 의한 관계서류의 보완요구를 받은 자:5점 감점

4. 제4조 제6항에 의한 관계서류의 보완요구를 받은 자:2점 감점

③ 부도업체로서 조달청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제2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법원의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업체) 및 동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법정관리인가 또는 화의인가가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적격심사 총평가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④ 공동수급체의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제재 또는

감점을 받는 자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동 사항을 직접 야기시킨 자를 말한다.

⑤ 제2항에 해당하는 감점 대상업체가 감점기간 중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당해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제9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

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10조 [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회계예규와 조달청 P.Q 심사기준 등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세부기준은 관보게재일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의 낙찰자 선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날부터 적용하며,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는 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날 이후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공고 제1998-121호(1998.9.12.)로 공고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폐지하되, 종전의 기준에 의한 감점대상업체의 감점기간과 종전 기준을 적용토록 입찰 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1] P.Q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P.Q 심사기준에 의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의 합산점수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

서 받을림한다.

- 점수 = P.Q 심사에 의한 합산점수 × 35/100

2. 입찰가격 평가(30점)

$$3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받을림하여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31점)

○ 입찰후 현장관리 및 공사관리 세부계획의 제출을 약속하는 약속서 제출로 31점을 잠정 인정

-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 수행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시공여유율 평가점수를 최종 합산하여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1)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별표 4)

(2)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별표 5)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아래 산식에 의하여 25% 미만 12점, 30% 미만 11점, 30% 이상 10점으로 평가한다.

$$\left(\frac{\text{예비가격 기초금액상의 순공사원가} - \text{입찰내역서상의 순공사원가}}{\text{예비가격 기초금액상의 순공사원가}} \right) \times 100$$

주) 순공사원가란 예비가격 기초금액 또는 입찰내역서상의 총금액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4. 시공여유율 평가(4점)

○ 미기성총액 / 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로 평가: 2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2.3 미만	4.6 미만	6.9 미만	9.2 미만	9.2 미만
점 수	2.0	1.9	1.8	1.7	1.6

○ 미기성총액 / 실질자본금의 산출계수로 평가: 1.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5.2 미만	10.4 미만	15.6 미만	20.8 미만	20.8 미만
점 수	1.0	0.9	0.8	0.7	0.6

○ 미기성총액 / 순유동자산의 산출계수로 평가 : 1.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10.0 미만	20.0 미만	30.0 미만	40.0 미만	40.0 미만
점 수	1.0	0.9	0.8	0.7	0.6

- 주) 1. 평가자료가 없거나 자료의 수치가 부(-)의 수치인 경우에는 당해심사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함
 2. 시공여유율 평가는 일반건설업종에만 한정하여 평가하며 다른 업종의 적격심사시에는 시공여유율의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함
 3. 시공여유율의 평가를 위한 자료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통보된 자료로만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통보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시공여유율 산정방법
 가)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의하여 기신고된 최근 연도의 국내공사실적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미기성총액은 대한건설협회의 전산망 자료에 의하거나 대한건설협회에서 별도 통보 또는 제출하는 자료에 의거 평가하고 업체별 작성 제출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대한건설협회에서 미기성총액을 산출하여 조달청에 통보 하는 때에만 평가하며 미기성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미기성총액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함.
 나) 일반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미기성총액은 당해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종의 전체 금액을 적용함.
 다)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토·건업체는 토·건 시공능력공시액, 토·건 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중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함.
 라) 실질자본금은 기신고된 최근 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자본금액임
 마) 순유동자산은 기신고된 최근 연도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임
 - 대차대조표는 건설업체의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결산자료에 의하되, 조달청 P.Q 심사기준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수시결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료에 의함.

5.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40점)

- 최근 1년 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에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 -20점
-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점

- 주)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감점 점수에 당해공사에 대한 결격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입찰집행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적격심사 대상자가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당해공사의 결격사유로 본다.

[별지 2]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5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시험경험(20점) [택일적용]

심사항목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1)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20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입찰공고시 평가기준 규모 및 동일공사 규모명시)	당해동사규모대비 A: 200% 이상: 20점 B: 150% 이상: 18점 C: 100% 이상: 16점 D: 30% 이상: 14점	입찰참가자격 요구실적이 D등급 이하인 경우 입찰참가 자격 요구 실적 보유자는 D등급으로 평가
(2)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전문, 전기, 정보통신공사 포함)(20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 × 20 (단, 평점상한은 20점) * 실적계수 = 업종별 실적의 합계액 ÷ (예비가격 기초금액 × 3)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함

○ 경영상태(15점)

- 점수 = 조달청 P.Q 심사기준상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15/35

○ 신인도(±2.5점)

- 점수 = 별표 1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5/10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P.Q 이외 경쟁입찰공사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1.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우수 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간)	3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 광역시 도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2	상기등급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1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3천만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3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일 후 1년간 적용),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5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최근 1년간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2.0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자
	-0.5	서면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7	서면경고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고의·과실로 인하여 관련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5. ISO 국제품질체제인증 받은 자(인증서 발행일로부터 유효기간까지)	2	ISO 국제품질체제 인증을 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
	1	ISO 국제품질체제 인증을 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비율의 합계가 15% 이상인 경우
6.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1	3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제재기간 만료후 제재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
	-2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제재기간 만료후 제재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
	-3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부실시공 및 부실설계)에 의한 6개월미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기타사유로 6개월이상 1년미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제재기간 만료후 제재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
	-4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의한 6개월이상 1년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또는 기타 사유로 1년이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제재기간 만료후 제재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
	-5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의한 1년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제재기간 만료후 제재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

- 주) 1.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항목중 5항 및 6항에 대하여만 평가함
 2. 신인도 관련 항목중 1항, 2항 및 5항에 대하여는 해당업종 관련사항만 평가하고 기타항목은 업종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함.(단, 토건, 토목, 건축공사업은 동일업종으로 본다)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평가시 과징금 1회와 영업정지 1회의 경우는 합산하여 - 1.5점(과징금 2회)으로 평가함
 4. 3항의 벌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정적용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항을 관련자료 통보기관에서 확인하여 조달청에 통보, 접수된 자료에 한하여 적용하며 고발조치 등 미확정 자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각 심사항목의 최근 1년간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당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6. 평가항목중 6항에 대한 평가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이 관보에 게재된 경우와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하여 평가함.

2. 입찰가격 평가(30점)

○ $3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31점)

- P.Q 공사에 적용하는 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시공여유율 평가(4점)

- P.Q 공사에 적용하는 시공여유율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40점)

P.Q공사에 적용하는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P.Q 공사 이외의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공사의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20/35

2. 입찰가격 평가(50점)

$$○ 50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시공계획 적정성 평가(30점)

○ 입찰 후 현장 및 공사관리계획서의 제출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로 30점 잠정 인정.

-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 수행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최종 합산하여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1)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별표 4에 의한 평점×10/11)

(2)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별표 5)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 아래 산식에 의하여 20% 미만 12점, 25% 미만 11점, 25% 이상 10점으로 평가한다.

$$\left(\frac{\text{예비가격 기초금액상의 순공사원가} - \text{입찰내역서상의 순공사원가}}{\text{예비가격 기초금액상의 순공사원가}} \right) \times 100$$

주) 1. 순공사원가란 예비가격 기초금액 또는 입찰내역서상의 총금액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2. 추정가격이 78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에서 교부받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역서에 따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되 산출내역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 후 제9조 제2항에 따라 조치한다.

주) 입찰집행 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적격심사 대상자가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당해공사의 결격사유로 본다.

4.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P.Q공사에 적용하는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 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시공경험 평가(15점)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2)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P.Q 이외 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한 점수×15/20=평점

1-2) 기타 방법에 의한 경쟁입찰의 시공경험 평가(15점)

○ 당해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배 해당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의 실적계수로 평가(8점)

－ 점수=실적계수점(단, 평점 상한은 8점)

※ 실적계수=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예비가격 기초금액×3)

○ 최근 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의 비율로 평가(7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300%미만	600%미만	900%미만	900%이상
점 수	7.0	6.0	5.0	4.0

1-3) 경영상태 평가(15점)

○ 점수=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1-4) 신인도 평가(-2점)

○ 부정당업자 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및 공동수급체에 동 업체가 포함된 경우: -2점

2. 입찰가격 평가(70점)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70 - 3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3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4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

P.Q공사에 적용하는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경쟁입찰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1-1)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시공경험 평가(8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2)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P.Q 이의 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한 점수×8/20=평점

1-2) 기타 방법에 의한 경쟁입찰의 시공경험 평가(8점)

○ 당해공사의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배 해당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 누계액의 실적계수로 평가(4점)

－ 점수=실적계수×4점(단, 평점 상한은 4점)

※ 실적계수=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 누계액/(예비가격 기초금액×3)

○ 최근 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의 비율로 평가(4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300%미만	150%이상	100%이상	100%미만
점 수	4.0	9.0	8.0	7.0

1-3) 경영상태 평가(12점)

○ 점수=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1-4) 신인도 평가(-2점)

○ 부정당업자 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및 공동수급체에 동 업체가 포함된 경우 : -2점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 5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1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5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P.Q공사에 적용하는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지 6] 수의계약대상공사를 일반경쟁에 의하는 경우의 평가기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해당공사)

1. 수행능력 평가(20점)

1-1) 당해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 누계액의 비율로 평가(10점)

1-2) 경영상태 평가(10점)

○ 당해공사에 대한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 : 평점 10점 부여

1-3) 신인도 평가(-2점)

○ 부정당업자 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 -2점

2. 입찰가격 평가(80점)

$$\text{○ } 80 - 5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1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5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40점)

○ 최근 1년 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에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 -20점

○ 부도 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점

주) 입찰진행이후 낙찰자선정 이전에 적격심사대상자가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당해공사의 결격사유로 본다

[별지 7] 일괄입찰 등의 공사중 P.Q대상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5점)

○ 조달청 P.Q 심사기준상에 의한 수행능력 점수 $\times 25/35$

2. 입찰가격 평가(30점)

○ 점수 = $30 \times L/P$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100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감점

$$\text{점수} = \text{획득점수} - \{(E' - P)/E\} \times 30$$

L = 최저입찰자의 입찰가격

P =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E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E'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80% 상당가격

3. 설계평가(40점)

○ 점수 :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수요기관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설계점수 $\times 40/100$

4. 시공계획 적정성 평가(5점)

- 입찰후 현장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약속하는 각서 제출로 5점 인정
- 일괄입찰 등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별표 4)

5.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

- P.Q공사에 적용하는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지 8] 일괄입찰 등의 공사중 P.Q대상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5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시공경험(15점) [택일적용]

심사항목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1)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입찰공고시 평가기준 규모 및 동일공사 규모명시)	당해공사규모대비 A: 200% 이상: 15점 B: 150% 이상: 13점 C: 100% 이상: 11점 D: 30% 이상: 9점	입찰참가자격 요구실적이 D등급 이하인 경우 입찰참가 자격 요구실적 보유자는 D등급으로 평가
(2) 기타 방법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전문, 전기, 정보 통신공사 포함)(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실적(금액)	점수=실적계수×15 (단, 평점상한은 15점) *실적계수=총실적의 합계액/(추정가격×3)(단, 추정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함

○ 경영상태(10점)

- 점수=조달청 P.Q 심사기준상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10/35

○ 신인도(±2.5점)

- 점수=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 1)의 신인도 심사항목 평점합계×5/10

2. 입찰가격 평가(30점)

○ 점수=30×L/P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100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감점

점수=획득점수 - {(E'-P)/E}×30

L=최저입찰자의 입찰가격

E=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P=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E'=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80% 상당가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설계평가(40점)

○ 점수 :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수요기관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설계점수×40/100

4. 시공계획 적정성 평가(5점)

○ 일괄입찰 등의 공사중 P.Q 대상공사에 적용하는 시공계획적정성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

○ P.Q공사에 적용하는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 점	
		A공사	B공사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4	A. 40%미만 B. 90%미만 C. 14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4.0 3.6 3.2 2.8 2.4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순이익/매출액)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4	4	A. 120%이상 B. 100%이상 C. 90%이상 D. 70%이상 E. 70%이상	4.0 3.6 3.2 2.8 2.4	4.0 3.6 3.2 2.8 2.4
다.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	3) 업종별 평균매출액 순이익률에 대한 해당업체의 매출액 순이익률	3	2	A. 150%이상 B. 100%이상 C. 4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2.0 1.8 1.6 1.4 1.2
라. 최근년도 총자본 회전율(매출액/총자본)	4) 업종별평균 총자본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총자본 회전율	3	2	A. 140%이상 B. 100%이상 C. 6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2.0 1.8 1.6 1.4 1.2

※ 주 :

(1) 평가요소별 업종별 평균비율 적용은 붙임 <별표 2-1>에 의한다.

(2) 배점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미만 10억이상 공사의 평가시 적용하고,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의 평가시 적용함

(3) 평가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경우 심사항목별 해당업체의 비율이 (+)의 수치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하고, 부(-)의 수치인 경우에는 E등급으로 평가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1] 업종별 경영상태의 평균비율표

구 분	일반건설	전 기	정보통신	의 장	토 공	미장방수	석 공	도 장
부채비율	380.63%	528%	304%	224%	125%	157%	129%	129%
유동비율	223.18%	116%	131%	202%	282%	253%	305%	281%
매출액 순이익율	2.83%	-0.3%	0.6%	1.12%	1.19%	1.23%	1.30%	1.96%
총자본 회전율	1.21회	1.1회	1.0회	2.24회	1.61회	2.58회	1.52회	2.02회

구 분	조 적	비 계	창 호	지 붕	철 콘	철 물	상하수도	보 링	철도궤도
부채비율	194%	223%	230%	220%	113%	174%	97%	156%	98%
유동비율	194%	196%	199%	182%	302%	238%	319%	227%	427%
매출액 순이익율	0.08%	1.29%	1.56%	0.98%	1.22%	1.76%	1.82%	1.35%	2.67%
총자본 회전율	3.46회	1.83회	1.70회	1.87회	1.65회	1.87회	1.48회	1.61회	1.07회

구 분	포 장	수 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건축물조립	강구조물	온 실	승 강 기	기계설비
부채비율	99%	173%	189%	130%	254%	223%	147%	303%	173%
유동비율	307%	245%	288%	302%	180%	183%	286%	154%	186%
매출액 순이익율	2.13%	1.67%	2.65%	2.62%	1.08%	1.37%	1.17%	1.31%	2.9%
총자본 회전율	1.41회	1.55회	1.19회	1.56회	1.82회	1.63회	1.52회	2.22회	1.56회

[별표 3] 현장관리 및 공사관리계획 제출 확약서

1. 현장관리계획

기술자구분	배치 기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5]에 의한 당해 공사관련 현장대리인 배치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 관련 [별표11]에 의한 기술자 배치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3]에 의한 기술자 배치
라. 현장 조직	●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인 이상의 기술자등 배치

2. 공사관리계획

계획분야	세부계획내용
가. 공정관리계획	- 당해공사 수행에 적합한 공정표
나. 품질관리계획	-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당해공사 설계서에서 요구한 내용
다. 안전관리계획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해공사 설계서에서 요구한 내용
라. 하도급관리계획	- 입찰가격 대비 40% 이상의 하도급 - 입찰가격 대비 87% 이상 100% 미만을 하수급인과 계약 - 입찰가격의 6% 이상을 ISO인증을 획득한 업체로 선정된 하수급인 선정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부대입찰서류에 의거 평가
마. 환경보전계획	- 환경관련 법규와 당해공사 설계서에서 요구한 내용

당사는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아래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자로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4조의 2(확약서 제출)의 규정에 의거 세부기준 <별표4> 및 <별표5>에 의하여 현장관리계획 및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계획서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세부계획서 제출후 보완요구 등이 따르는 경우 동 세부기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반 조치에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공사관리번호 :
- 공사명 :

조달청장 귀하
199. . .

○○건설 대표 ○○○

[별표 4-5] 시공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기준

1.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별표 4)
2.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별표 5)

[별표 4]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토목·건축공사 등(11점)

평가요소	등급 및 평점		비 고
	등 급	평 점	
가. 현장대리인 배치	적정	3.5	-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관련 [별표5]에 의함. ※ 배치기준상의 공사에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나. 품질관리자 배치	적정	3.0	- 배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 관련 [별표11]에 의함. ※ 배치기준상의 총공사비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안전관리자 배치	적정	3.0	- 배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관련 [별표3]에 의함.(단, 공사금액 100억원미만의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 - 평가대상인력은 1인으로 하되, 공사금액 800억원이상인 공사는 건설안전기사 이상이어야 함.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에는 시공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추가배치하여야 함. ※ 배치기준상의 공사금액이라 함은 입찰가격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라. 현장관리조직			- 관리조직구성 • 현장대리인 • 자재관리 • 공무관리 • 안전관리 • 시공관리 • 품질관리 • 노무관리 등 -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가 타 현장의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경우에는 중복배치된 것으로 간주함. 다만, 적격심사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예정인 기존공사와 중복배치된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추정금액1백억원 미만	A : 5인이상 B : 3인이상	1.5 1.0	
○ 추정금액1백억원 이상	A : 7인이상 B : 5인이상	1.5 1.0	
○ 추정금액3백억원 이상	A : 9인이상 B : 7인이상	1.5 1.0	
○ 추정금액5백억원 이상	A : 11인이상 B : 9인이상	1.5 1.0	

※ 주 : 1. 기술인력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인협회등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의함.
2. 해당 등급이 없을 경우와 부적정일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함

○ 전문·전기·정보통신공사 등(11점)

평가요소	등급 및 평점		비 고
	등 급	평 점	
가. 현장대리인배치	적정	3.5	- 전기공사 • 배치기준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함 - 정보통신공사 • 배치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함
나. 품질관리자배치	적정	3.0	- 전기공사: 전기공사 기사1인 -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분야 기사1인 - 경력은 공사현장에서 품질관리 관련근무자 또는시공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포함)로 근무한 경력임
다. 안전관리자배치	적정	3.0	- 배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관련 [별표3] 에 의함.(단,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 - 평가대상인력은 1인으로 하되, 공사금액 800억원이상인 공사는 건설안전기사 이상이어야 함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에는 시공과정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추가배치하여야 함 ※ 배치기준상의 공사금액이라 함은 입찰가격에 도급자설치 관급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라. 현장관리조직	A : 5인이상 B : 3인이상	1.5 1.0	- 관리조직 구성 • 현장대리인 • 자재관리 • 공무관리 • 안전관리 • 시공관리 • 품질관리 • 노무관리 등 -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가 타현장의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경우에는 중복배치된 것으로 간주함. 다만, 적격심사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준공예정인 기존 공사와 중복배치된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주) 1. 기술인력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인협회등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의함
2. 해당등급이 없을 경우와 부적정일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일괄입찰 등의 공사(5점)

평가요소	등급 및 평점		비 고
	등 급	평 점	
가. 현장대리인 배치	적정	1.5	-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관련 [별표5]에 의함. ※ 배치기준상의 공사에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함.
나. 품질관리자 배치	적정	1.5	- 배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 관련 [별표11]에 의함. ※ 배치기준상의 총공사비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안전관리자 배치	적정	1.5	- 배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관련 [별표3]에 의함.(단, 공사금액 100억원미만의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 - 평가대상인력은 1인으로 하되, 공사금액 800억원이상인 공사는 건설안전기사 이상이어야 함.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에는 시공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추가배치하여야 함. ※ 배치기준상의 공사금액은 입찰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함.
라. 현장관리조직			- 관리조직구성 • 현장대리인 • 자재관리 • 공무관리 • 안전관리 • 시공관리 • 품질관리 • 노무관리 등 -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가 타 현장의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경우에는 중복배치된 것으로 간주함. 다만, 적격심사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예정인 기존공사와 중복배치된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추정금액10억원 미만	A : 5인이상 B : 3인이상	0.5 0.3	
○ 추정금액1백억원 이상	A : 7인이상 B : 5인이상	0.5 0.3	
○ 추정금액3백억원 이상	A : 9인이상 B : 7인이상	0.5 0.3	
○ 추정금액5백억원 이상	A : 11인이상 B : 9인이상	0.5 0.3	

※ 주 : 1. 기술인력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인협회등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의함.
2. 해당 등급이 없을 경우와 부적정일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함

[별표 5]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공사 등(8점)

평가요소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 점	
			- PERT/CPM 또는 막대그라프방식 등에 의거 작성된 공정표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적정으로 평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평가요소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 점	
가. 공정관리계획	적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에 따른 주요자재 투입계획 ※ 공사기간, 공사규모, 주요자재량등이 당해공사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부적정 평가함. ※ 상세공정표는 공사착공시까지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
나. 품질관리계획	적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의 2(별표9)에 의거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제출(단, 공정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어야 함) ※ 품질시험계획이 당해공사의 공정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부적정으로 평가함.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에 해당되는 공사는 품질보증계획을 공사착공시까지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
다. 안전관리계획	적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에 대한 상세계획을 작성 제출 ※ 안전관리계획이 당해공사의 공정 및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부적정으로 평가함
라. 하도급관리계획 ◇ 하도급비율		(4.0)	- 전문, 전기, 정보통신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A: 40% 이상 B: 30% 이상	2.0 1.0	-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A: 77% 이상 ~ 80% 미만 B: 80% 이상 ~ 83% 미만 C: 83% 이상 ~ 87% 미만 D: 87% 이상 ~ 100% 미만 E: 100% 이상	-3.0 -2.0 -1.0 1.0 0.5	-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부대입찰서류상의 금액임
◇ ISO품질인증업체	A: 6% 이상 B: 3% 이상	1.0	- 입찰가격대비 ISO국제품질인증 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으로 평가
마. 환경보전계획	적정	0.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련법규와 당해공사 설계서에서 요구한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된 계획서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적정으로 평가 당해공사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폐기물 등의 발생시기, 발생장소, 발생원인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 ※ 환경보전계획이 당해공사의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부적정으로 평가

※ 참고 :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내용(요약)

구 분	현 행	개 정
PQ심사시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경험: 33점 ■ 기술능력: 34점 ■ 경영상태: 33점 ■ 신인도: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경험: 30점 ■ 기술능력: 35점 ■ 경영상태: 35점 ■ 신인도: ±10점
Y2K 해결, 물자사랑대상 수상업체 자산평가(제4조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2K 해결인증서 제출 및 물자사랑 대상 수상업체는 종합평점에 1점 가산평가 ※ Y2K 평가 2000년 2월 29일까지 적용
경영상태 평가시 수시 자료 인정 신용평가항목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결산서로 평가 반기결산서 제출시 반영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결산서 포함 4회까지 수시 결산서 제출 평가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Q심사: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 가산 ※ 2등급이하 업체가 참여할 경우 12% 가산 ■ 적격심사: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지역업체 시공비율만큼 가산 ■ 지역 단일업체 5%이상 참여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Q 및 적격심사 공통으로 시공비율만큼 가산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항목별 배점한도이내 최고 10% 까지 가산 ※ 공사금액하한 미적용업체 참여시 12% 까지 가산 ■ 현행의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산 ■ 지역업체의 합산 시공비율 5% 이상 참여시 적용
공동수급체의 평가자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Q심사: 보유자료에 시공비율을 곱한 자료만 인정 시공비율 30% 이상 100% 인정, 30% 미만 시공비율에 2배 곱한 자료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자료는 PQ 및 적격심사 공통으로 시공비율을 곱한 자료만 인정하여 평가
시공비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능력공시액 초과한 시공비율 인정평가 ※ 시공능력공시액은 1건 공사 시공기준 발표 금액이며 초과시는 발주자가 판단토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할 경우 시공능력공시액 만큼 시공비율 인정평가
시공경험 평가(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 33점 ■ 5개등급: 200%(14.4점) 100%(13.4점) 50%(11.4점) 10%(8.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 30점 ■ 5개등급: 200%(13.4점) 150%(12.1점) 100%(10.7점) 50%(9.4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구 분	현 행	개 정
	5%(6.9점) ■ 최저등급 점수:A등급 배점의 44% 적용	10%(8.0점) ■ 최저등급 점수:A등급 배점의 60% 적용
기술능력평가(35점)	■ 배점 34점 • 기술자보유: 16점 • 설비, 장비: 8점 • 기술, 공법: 5점 • 시공경험 축적기간: 5점	■ 배점 35점 • 기술자보유: 17점 • 설비, 장비: 6점 • 기술, 공법: 6점 • 시공경험 축적기간: 6점
경영상태평가(35점)	■ 배점 33점 • 심사항목, 등급: 5개항목, 4개등급 ■ 최저등급 점수:A등급배점의 40% (유동), 54%(기술) ■ 등급간 배점간격을 20% 감하여 적용	■ 배점 35점 ■ 심사항목, 등급 5개항목, 5개등급 ■ 최저등급점수:A등급배점의 60% 적용 ■ 등급간 10%씩 배점차이 둠
신인도평가(±10점)	■ 배점 ±20점 ■ PQ심사통과자가 입찰 불참시 감점 ■ 환경관련 벌점중 과태료 부과, 사용중지, 공사중지, 벌금(고발) 포함	■ 배점 ±10점 ■ 적용기간 최근 1년간으로 동일 ■ 회계예규 내용이외의 평가 요소는 삭제 ■ PQ심사통과자가 입찰불참시 감점제도 폐지 ■ 환경관련 벌점중 과태료 부과, 사용중지, 공사중지제의 과징금, 영업정지, 벌금만 포함(고발삭제)
적격심사시합격판정 점수상향조정	■ 종합평점 75점이상	■ 종합평점 85점이상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단계별 구분	■ 4단계 • 100억이상 PQ공사 • 100억원이상 PQ이외의 공사 • 100억미만 30억원 이상공사 • 일괄입찰공사	■ 7단계 • 100억이상 PQ공사 • 100억원이상 PQ이외의 공사 • 100억미만-50억원 이상공사 • 50억미만-10억원이상공사 • 10억원 미만공사 •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일반 경쟁시 기준 • 일괄입찰공사
PQ공사의 평가기준 (제3조1항)	■ PQ공사도 별도 적격기준 작성 평가(기술능력제외)	■ PQ공사는 PQ심사기준의 평가 방법에 의함 (기술능력제외)
시공여유율평가 (제3조제1항)	■ 평가항목 없음	■ 시공여유율 평가신설: 4점 ■ 업체별 미기성총액 대비 시공능력공사액, 실질자본금, 순유동자산의 산출계수로 평가 ■ 공동도급시는 시공비율에 의거 평가
시공계획의 적정성 분야에 대한 사후보완 (제4조)	■ 2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하며 1회보완시 7일, 2회보완시 3일부여	■ 1회에 한하여 보완가능하며 7일간 부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구 분	현 행	개 정
부정당업자 제제조항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근거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부정당업자 제제
적격심사시 감점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발생일로부터 2개월간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로 제출: 10점감점 • 심사서류 미제출자: 5점감점 • 서류보완지시를 받은자: 1회 2점, 2회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서류의 위조, 변조: 10점감점 • 심사서류 미제출자: 5점감점 • 내역서 보완 요구자: 5점감점 • 서류보완 요구자: 2점감점
일괄입찰등의 기준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능력 25점 입찰가격 20점 설계평가 50점 시공계획의 적정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점수를 10점 감하여 입찰가격 점수에 가산 (설계 50 → 40, 가격 20 → 30) ■ 최저낙찰율 80% 보장

적격심사 규모별 배점기준

구 분		10억원미만	10-50억미만	50-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배 점	수행능력	20	30	50	70
	입찰가격	80	70	50	30
수행능력 심사항목		시공경험 경영상태	시공경험 경영상태	최동의 신인도 공사계획의 적정성	최동의 기술능력 시공여유율 신용평가(500억이상 PQ공사)

* 설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가스배관공사
시공 가능 여부]

Q ①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의 자격은 보유하지 않았으나,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갖춘 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②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의 가스배관공사 시공 가능 여부

A 1) 질의 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의 종별 등록자가 아니면 종별 가스시설시공을 위한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질의 ②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가 아니면 가스배관시공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998년 5월 7일 산업자원부 가안 57253-233)